

보도 일시	2022. 8. 16.(화) 12:00 (수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8. 16.(화)
담당 부서	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	책임자	과 장 황인목(044-201-6920)
		담당자	수석전문관 송태곤(044-201-6929)

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
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 17일 공포, 2023년 1월 1일 시행 -

- 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에 조기폐차 지원 추진
- ☐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로 지원 종료 예정, 운행제한 지역 확대

☐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- 4등급 경유차는 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,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*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** 수준으로 배출되며,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.

* 황산화물,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하여 생성되는 초미세먼지

** [경유차 초미세먼지 배출량] (5등급) 8.7 > (4등급) 4.1 > (3등급) 1.6kg/대/년

☐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.

-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,400톤,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.

-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.4%, 온실가스의 약 4.8%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.

- 한편,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(이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)에 대해,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*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17 제2호 라목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

-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되어 있었으나,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‘미세먼지 계절관리제(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)’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, 67%가 줄어들었다.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.

-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,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‘미세먼지 계절관리제’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

-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2월

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고,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된다.

-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.

- 환경부는 특광역시 외에도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.

-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“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”라면서, “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,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- 아울러, “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배출가스 등급제 개요 및 자동차 등록현황.
2.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. 끝.

붙임 1

배출가스 등급제 개요 및 자동차 등록현황

□ 자동차 등급 기준

○ (개념)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~5등급으로 분류

○ (등급별 적용 기준) 5 → 1등급으로 갈수록 강한 기준이 적용

- (5등급 경유차) '05.12.31.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(Euro3 이하)

- (4등급 경유차) '06.1.1.~'09.8.31.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(Euro4)

- (3등급 경유차) '09.9.1. 이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(Euro5 이상)

※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이며, 현재 시판되는 제작차는 3등급에 해당

○ (확인방법)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(www.mecar.or.kr)에서 조회

- 출고유예*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자동차 등록번호 등으로 조회 필요

* (출고유예)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시행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제작차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유예

□ 배출가스 등급별 자동차 등록현황('22.7월 기준)

○ 전국 경유차 986만대 중 5등급차 114만대, 4등급차 116만대 등록

< 등급별 유종별 등록 현황('22.7월) >

(단위 : 대)

등 급	총 계	휘발유	경유	가스	전기·수소	기타연료*
합 계	25,108,214	12,980,045	9,858,512	1,931,118	338,471	68
1등급	2,613,942	1,797,873	-	477,598	338,471	-
2등급	11,086,528	9,906,521	-	1,180,007	-	-
3등급	8,717,944	913,036	7,558,106	246,799	-	3
4등급	1,519,131	332,581	1,160,239	26,272	-	39
5등급	1,170,669	30,034	1,140,167	442	-	26

* "기타연료"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(VMIS)에 연료가 "기타연료"로 등록된 차량임

- (4.5등급 상세현황) 4.5등급 경유차 **230**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채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총 **132**만대
- (5등급) 총 **114**만대 중 매연저감장치 등 미장착 차량은 **78**만대이며, 그 중 實 운행 차량(보험 가입)은 **48**만대(수도권 5만대, 수도권 외 43만대)
- (4등급) 총 **116**만대 중 매연저감장치 등 미장착 차량이 **85**만대이며, 그 중 實 운행 차량(보험 가입)은 **84**만대(수도권 32만대, 수도권 외 52만대)

< 4.5등급 경유차 상세현황 >

(단위 : 대)

등급	지역	합계	매연저감장치 등 장착	미장착		
				계	보험가입	보험미가입
4·5등급 합계		2,300,406	673,421	1,626,985	1,315,642	311,343
5등급	계	1,140,167	363,488	776,679	479,894	296,785
	수도권	397,567	216,973	180,594	46,357	134,237
	수도권 外	742,600	146,515	596,085	433,537	162,548
4등급	계	1,160,239	309,933	850,306	835,748	14,558
	수도권	441,774	116,460	325,314	318,957	6,357
	수도권 外	718,465	193,473	524,992	516,791	8,201

□ (경유차 배출가스 기준)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7 제2호

※ (제1호) 휘발유가스차 / (제3호) 이륜차 / (제4호) 건설기계 / (제5호) 농기계 / (제6호) 철도차량

< 등급별 배출가스 기준 >

배출가스 등급	적용 기준	해당 조문 (별표17 제2호 각목)	배출기준 적용 시기
5등급	Euro3 이전	가~라 목	~'05.12.31.
4등급	Euro4	마 목	'06.1.1.~'09.8.31.
3등급	Euro5 이후	바~아 목	'09.9.1.~

붙임 2

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

□ 개요

-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%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,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

* ('22년 지원비율) 국비 60%, 지방비 40%

□ 지원 주요내용

- (대상차량)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
- (선정조건) 대기관리권역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
 - ※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저감장치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
- (지원내용)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(중소형 차량 기준 300만원 이하)

<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>

구분		상한액 (기본+추가 지원)	지원율	
			기본	추가 지원
총중량 3.5톤 미만	승용(5인승 이하)	300	50%	50% (무공해차 구매시 +50만원)
	그 외	300	70%	30%
총중량 3.5톤 이상	3,500cc 이하	440	100%	200%
	3,500cc 초과 5,500cc 이하	750		
	5,500cc 초과 7,500cc 이하	1,100		
	7,500cc 초과	3,000		
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		4,000		

※ △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: 60만원 추가지원(상한액 이내), △저소득층(생계형 차량): 차량기준가액의 10% 추가지원(상한액 이내), 이 외 구체적인 지원 조건, 금액 등은 관할 지자체 문의

- (지원절차) * 온라인 신청(<https://www.mecar.or.kr>) : 민원서비스-저공해조치신청

